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97 발의연월일: 2022. 7. 21.

발 의 자 : 인재근 • 서영석 • 이장섭

김한정 · 최혜영 · 소병훈

최종윤 • 양정숙 • 김승남

고영인 · 강준현 · 남인순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사·한의사·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·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불법으로 개설·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.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 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,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33조의3).

법률 제 호

##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3제1항 전단 중 "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"를 "제4조제2항, 제33조제2항·제8항·제10항을 위반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제33조제2항을 위반한"을 "제4조제2항, 제33조제2항·제8항·제10항을 위반한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"방법"을 "대상·방법"으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행 개 혅 정 아 제33조의3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 제33조의3(실태조사) ① -----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 -----제4조제2항, 제33조제2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 항ㆍ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는 자가 개설 · 운영하는 의료 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(이하 이 조에 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 하고.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 제2항, 제33조제2항ㆍ제8항ㆍ제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 10항을 위반한----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 에 포함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 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 면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야 한다. 관계기관 • 법인 또는 단체의

3	실티	내조사	의	시)	7] • 1	방법	및
결고	구 공	표의	방	법	등에	관히	-여
필요	2한	사항	<u>0</u>	보긴	년복Z	]부렁	0
로.	정 하	다.					

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
<u>대상·방법</u>
,